

일·EU FTA 상호인정협정(MRA)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e of Export Companies to Japan-EU EP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김영호(Young-Ho Kim)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III. 일-EU FTA 현황과 상호인정협정 | ABSTRACT |
| IV. 일-EU MRA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EU 자유 무역 협정의 내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 인정 협정 (MRA)을 검토하고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2017 년 벨기에 브뤼셀 에서 개최 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일-EU 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모든 교역 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일본 자동차는 7년간의 유예 기간과 15년간 유럽 치즈의 점진적인 철폐와 함께 관세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다. EPA 협정으로 일본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가공 식품, 화학제품, 의료 장비, 유제품 및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국제적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 둘째, 한국기업 의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셋째, 한국이 체결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넷째, 기업의 MRA 운 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상호인정협정, 일-EU FTA, 경제동반자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인증제도

* 본 연구는 2017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I. 서론

2011년 7월 1일 한국-EU 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일본 기업들은 극도의 위기감을 표출하였다. 일본 기업은 2011년부터 정부를 압박해 EU와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EU와 일본은 총 18회 협상을 통해 EPA 형태로 FTA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ASEAN 및 미·ASEAN 경제관계의 긴밀화, 한·미 및 한·EU의 FTA 체결 등에 영향을 받아 대 개도국/선진국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 전략을 추진하면서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현실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며 EPA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EPA체결을 추진하였고, 이미 EPA가 발효된 국가이외의 국가 및 지역과의 EPA체결에 합의하고, 2012년 11월, EU 이사회는 일본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추진을 승인하였고, 2013년 3월에는 양자 간의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일본과 EU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2002), 경쟁제한 행위협력협정(Agreement on Co-Operation on Anti-Competitive Activities: 2003) 등 다양한 경제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었다.

EU는 우리나라의 FTA 기체결국이다. 2009년 7월 우리나라는 EU와는 FTA를 공식적으로 타결하였으며, 국내 비준 절차를 걸쳐 2011년 7월부터 한-EU FTA가 발효되었다. EU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제품간의 치열한 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EU와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 12개국의 경제자유화 협상인 TPP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7년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EU FTA 회담을 재개하였는데, 전체 무역 품목 중 9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해당하는 높은 자유화 수준의 협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일본산 승용차는 7년 유예를 두고 관세 철폐를, 유럽산 치즈에 대해서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만약 협정이 체결되면 10억 유로(약 1조 3천억원)의 관세가 사라져 일본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한국의 경우 가공음식, 화학제품, 의료장비, 유제품류,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EU FTA에 대한 내용중 한국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MRA)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TBT와 MRA

1948년 GATT체제가 형성되면서 자유무역을 위한 8번의 라운드가 진행되었다. 6차까지의 라운드는 주로 관세인하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동경라운드(제7차)에서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때 핵심적인 현안으로 부각된 것이 TBT협정, 반덤핑협정, 관세평가협정, 보조금 및 상관관세협정, 정부조달협정, 수입허가협정, 민간항공기협정, 나녹상품협정, 우육협정 등 9개 협정이 체결되었다.

TBT 협정(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은 한 나라가 자국의 기술 기준 및 이와 관련된 인증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수입 규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국내 정책 운영이 무역장벽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기술기준 및 인증제도 등을 상호간 조화(harmonization) 또는 단일화(unification)하여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협정이었다(WTO, 1994)¹⁾.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은 상호간 상이한 기술규정으로 인해 자유 무역을 저해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의미하는데, 수출국이 이러한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그 자체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TBT의 유형은 정부에 의해 부과된 기술규정과 자발적이지만 비정부기구에 의해 부과되는 표준 그리고 적합성평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살펴볼 수 있다(손원근, 2004:11)²⁾.

첫째,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다. 기술규정은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강제적인 문서를 의미한다. 주로 상품, 공정, 생산방법 등에 사용되는 기호, 포장, 상표부착요건 등에 대한 규정이다. 둘째, 표준(standard)이다. 표준이라 생산방법, 특성, 공정 등을 정의한 문서등이다. 각 기관이 표준을 규정하여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등을 규정하게 되면, 정부나 관련기관들에 의해 표준을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이 시장여건상 기술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이다. ‘표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즉, 외국의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기술명세에 의해 상품을 제조 혹은 개조하여 수출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을 위해 수입국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994. (이하 ‘WTO/TBT 협정’이라 함)

2) 손원근(2004), “WTO 체제 하에서 상호인정협정(MRA)를 통한 기술무역장벽(TBT)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학위논문. p.11.

TBT 협정, 특히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는 여전히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상충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데 수출 측면에서는 타국에게 압박으로 수입 측면에서는 수입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준의 표준화 부분에서 국가간 기술기준을 채택할 실적이 거의 없다. 상이한 국가기준에 의한 TBT는 상대적인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TBT 제도는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TBT 관련 제도에 대한 투명성 보장, 예외가 인정되는 강제규범 분야에 대한 상이한 기술규정의 국제적 조화, 그리고 시험, 검사 및 인증절차에 대해서도 되도록 많은 분야에서 상호인정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은 FTA 체결시 상대국의 기술 등의 평가제도가 자국의 제도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즉 상대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의 결과를 자국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정부간 행정협정이다.

MRA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표 1 참조). 원래 당사국간 기술적 사항보다는 법률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수출국 기업이 수입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활성화를 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 즉, 국가간 유사한 표준이나 기술수준을 상호간 인정 하자는 것으로 수출국 기업이 자국의 기준에 따라 시험 및 인증을 한 경우 수입국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여, 양국의 기술기준이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협정이다.

<표 1> MRA 단계별 내용(Table. Contents of MRA)

단계	인정 대상	주요내용
1	시험 성적서	수입국 기술기준에 따라 수출국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수입국에서 인정
2	인증서	수입국 기술기준에 따라 수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
3	기술 기준	수출국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수출국 기술기준에 따라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

전통적인 상호인정협정(MRA)의 개념은 체약국(양자 또는 다자)이 지정한 외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현재 추세는 인정 대상범위를 당사국의 기술기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국의 적합성평가(인증)제도 규제 자체를 더욱 간소화하여 방송통신기자재 같은 협정 대상품목의 교역을 좀 더 원활하게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교역에 장애가 되는 기술무역장벽(TBT)을 최대한 해소하는 진일보하고 있다(김영훈, 2011:23).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업체가 일본에 수출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PSE마크를 우리나라의 시험기관에서 일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을 하고 그에 대한 제품인증을 하고, 마찬가지로 일본기업도 우리나라로 전기용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필요한 K마크를 우리나라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의 시험기관이 시험을 하고 인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2. MRA 체결의 효과

상호인정협정은 자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입할 때 상이하게 적요되는 기술기준이 다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기준의 상이함을 인정하면서 서로 불편하거나 불공정한 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MRA의 효과는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2> 유사 개념 정리

구분	개 념
표준	자발적 기준으로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고 공통적이며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상품 또는 관련 공정과 생산방법의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규정하며 공인된 기관이 승인한 것
규제	강제적 기준으로 정부가 부과한 강제적 상품표준을 말하는 것
기술규정	그 준수가 강제적이며,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과 생산방법을 규정한 것
적합성 평가절차	규제(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이 충족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절차
인증	상품이 특정표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 공식적인 적합성의 선언
인정	독립된 기관에 의한 인증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상호인정	자국의 기준에 따라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적합성평가절차를 자국이 상호 인정하는 것

MRA 체결로 나타날 수 있는 이익은 첫째, 비용의 절감이다. 물론 양국의 인증제도의 단순 비용비교와 그 비용이 생산원가에 어느 정도 부담되는 가를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MRA가 체결된 경우에도 양국의 기술기준이 상이하면 중복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절감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양국의 기술기준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양국간 교역기간이 단축된다. 자국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 수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타국의 검사대기 시간이 상당부분 절약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상품의 수명주기 일 것이다.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상품의 수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단순한 기간의 비교는 불필

요할 것이다. 또한 기간의 단축이라는 것을 유형적 측면에서 단순 상품의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무형적 측면에서 상대국의 인증과 관련된 기회비용 측면에서 고려할 수도 있다. 납품 시간을 고려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단축 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에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각종 검사비용과 수반되는 부대비용이 수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또한 각국의 인증제도에 대해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제도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일본의 FTA협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훈(2007)은 일본의 미국에 대한 통상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EPA 체결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진출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본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종원(2009)은 일본의 대EU EPA추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에서 ○리본이 거점을 중심으로 FTA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으며, 한·EU FTA 체결로 인해 새로운 경쟁과 상대적 불이익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대비가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의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浦田·安藤(2010)는 일본의 기 발효 FTA 협정문을 분석하여 상품, 무역, 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을 비교하였으며, CGE 모형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FTA 발효 초기보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MFN 관세율과 FTA 관세율의 차이가 클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do and Urata(2011)는 2001~2008년 동안 일본-멕시코 FTA에 대한 수출입효과와 일본기업의 FTA 활용 효과를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FTA가 올바르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LIBERTAS(2013)는 일본과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의 FTA 무역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FTA 발효 이후 수출입이 증가하는 상품의 관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출입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재확·이학로·최혁준(2015) 일-EU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EU FTA가 없다는 가정하에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적인 측면에서 직물, 화학, 자동차 부품, 기계 장비 등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의 원인으로 생산단가의 하락, 유럽의 수입확대, 한국의 수출다변화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Ⅲ. 일-EU FTA 현황과 상호인정협정

1. 일-EU FTA 현황

1) 일-EU FTA 협상 경과

일본과 EU의 FTA는 EPA(경제협력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형태로 FTA의 무역장벽 제거를 넘어 인적자원이동, 비즈니스 환경 정비, 국가간 협력 등 폭넓은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었다.

<표 2> 일-EU FTA 추진경과

일정	내용
2011.05	EPA 협상 및 영향조사 개시 합의
2012.11	EU 이사회 협상 개시 승인
2013.04	제1차 협상회의
2014.11	G20 서밋 정상회의를 통해 협상 가속화 합의
2015.02~2016.09	제8차~제17차 협상회의
2017.02	통상담당 실무회의를 통해 조기 타결 합의
2017.04	제18차 협상회의
2017.07	일-EU EPA 정치적 합의 도출
	(잔여쟁점 지속 협상)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TPP 탈퇴와 브렉시트 등으로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는 모습이다. 2017년 7월 일-EU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일본은 TPP의 대안으로, EU는 영국의 EU 탈퇴 대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협상의 주요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일-EU FTA 협상의 특징

일본과 EU의 FTA 협상의 특징은 양측의 협상 목적이 다르며, 협상이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협상 목적 측면에서 일본은 EU의 고관세 철폐, EU는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서로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성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일본의 대EU 수출품목에는 60~70%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 TV의 경우에는 각각 10%, 14%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과 자동차 가전 분야에서 경합하고 있는 한국은 2016년부터 무관세로 거래를 하고 있다. 따라서 EPA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이 분야에서 관세 철폐와 인하를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반면 EU 입장에서는 대일 수출액의 약 70%가 비관세로 자동차, 일반기계 등이 무관세이다. 따라서, EU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관세철폐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정부조달, 지리적 표시, 전자제품, 가공식품 등의 분야에서 관세철폐가 목적이다.

둘째, 일본은 FTA를 동시병행 전략으로 추진하였는데 「日本再興戰略」改訂 2014- 未來への挑戦에서 FTA 협상시 국익의 최대화를 전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일 FTA, 일-EU FTA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 EU와 일본의 인증제도

1) EU의 인증제도

EU는 1989년에 ‘적합성 판정에 대한 세계적 접근에 있어서의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였다.³⁾ EU조약 제113조를 보면 ‘제3국과 MRA를 체결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EU이사회는 이 내용을 1992년 4월 유럽위원회에 권고함으로써 협상 지침이 결정되어 있다. 이 협상지침을 바탕으로 EU는 1994년 노르웨이, 스위스, 안도라, 중국, 일본, 미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홍콩, 태국, 터키 등의 신흥국가와 아프리카의 주요 신흥공업국들과도 MRA를 체결했거나, 진행중이다. EU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적극적으로 MRA를 체결하고 있다. EU의 인증제도는 3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IEC, 1991).

첫째, Old Approach라고 불리는 시기로 EU국가내 존재하는 기술규정이 시장장벽이라고 인

3) 『Council Resolution of 21 December 1989 on Global Approach of Conformity Assessment』, Official Journal C 010, 1990.1.16, pp.1-2.

식하는 단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회원국간 상이한 기술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인증절차, 인증마트에 대한 요건을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s)의 형태로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둘째, New Approach 단계로서 1980년대 중반부터 EU가 단일 시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문제는 기술장벽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EU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간 기술표준, 강제규정 등을 제정하여 도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CEN, CENELEC, ETSI 등 국가 간 기술적 합의를 통해 유럽규격(European Norm; EN)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Global Approach 단계로서 New Approach 단계에서 발생한 적합성판정과 관련된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1989년 ‘검사와 인증에 관한 세계적 접근방식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통해 회원국에 적합성 판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인기관의 기술적 능력과 전문성을 충족하여 판정에 대한 신뢰성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CE 마케팅과 관련 새로운 정책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모듈(module) 방식을 통해 9가지 인증방법을 지정하여 제조업체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 회원국은 New Approach 방식에 의해 지침이 채택된 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특정 기관을 공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은 집행위원회가 공인 기관에게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배정하고, 회원국은 번호를 배정 받은 후 3개월 내에 자국의 공인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면 집행위원회는 배정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다. 기관에 대한 공인은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전달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IFRE 2011).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공인기관이 요건이나 의무를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럽공동체 조약 제22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공인기관이 요건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은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한 후 공인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IFRE 2011).

EU는 프랑스어로 유럽적합성(Conformitee Europeene)의 약자인 CE라는 인증제도를 사용한다. 제품에 대한 보증(certificate)의 개념이 아니고 EU 이사회 지침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유럽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본의 인증제도

일본은 뉴질랜드, 미국, EU, 캐나다,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등과 상호인정협정(MRA)를

체결하고 있다. 일본은 첫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제품의 수입, 판매시 신고, 검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의 허가 형식 승인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항을 제품에 표시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S마크 부착을 의무화 하지 않지만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표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표시하는 마크, 문장, 번호 등이 있다(JIS, JAS 제도)

둘째, 민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협회, 공업회등 각종단체가 표준을 정하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SG, WOOL, Q 마크).

JIS(일본공업규격)는 일본에서 “공업표준화촉진을위해공업표준화법(1949년)”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국가규격이다. JIS마크 표시제도는 인정을 받은 생산자가 자기책임하에 제품에 JIS마크를 표기하는 것으로 JIS마크 표시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JIS에 적합한 상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자재, 소비재, 안전위생관계품목 등 약 900건이 해당한다.

인증취득자의 제품의 품질 및 품질관리체제가 당해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최초의 인증과 같은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구 전기용품단속법)”에 의하면 이 법에 적용되는 450개 전기용품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PSE마크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 당시, 구 전기용품단속법에 근거해 마크(T마크)를 부착하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로 품목에 따라 5년, 7년,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였다. 현재는 거의 모든 전기제품이 PSE 제도에 의해 PSE마크를 부착해야 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7).

일본은 상호인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VLAC(전자환경시험소인정센터), JAB(적합성인정협회), IAJapan(일본인터넷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VLAC은 1999년 ISO/IEC Guide 58의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VCCI(일본전자과장애인증)에서 분리·독립한 인정기관으로써 전자환경 시험기관의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JAB는 품질 시스템 등록을 위한 인증협회로 시작하여 1996년 시험기관 인정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일본적합성인정협회로 변경되었다. JAB는 제품인증 기관의 인정 및 등록, 시험기관, 검사기관의 인정 및 등록, MRA 관련 법에 근거하는 지정조사 업무(국가업무 대행), 해외 인정기관과의 상호 승인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JAB는 제품인증 기관의 인정 및 등록, 시험기관, 검사기관의 인정 및 등록, MRA 관련 법에 근거하는 지정조사 업무(국가업무 대행), 해외 인정기관과의 상호 승인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JAB는 제품인증 기관의 인정 및 등록, 시험기관, 검사기관의 인정 및 등록, MRA 관련법에 근거하는 지정조사 업무(국가업무 대행), 해외인정기관과의 상호 승인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MRA 내용

일본과 EU는 제2차 협상(2013.06)에서 주요 공산품에 대한 안전심사 통합(상호승인협정 MRA의 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에서 EU기준으로 심사가 가능하여 수출기업 입장에서 심사항목이 대폭 간소화되었다. 논의된 대상품목 가운데 자동차, 전자기기, 화학제품의 경우 무역비중이 높음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1992년 EU는 상호인정협정을 위해 10개국을 선정하였다. 10개국 가운데 일본이 포함되었는데 일본은 한국과 표준제도가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일-EU MRA는 1994년 정식협정에 대한 개시에 합의하고, 1995년 동경에서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설명회를 갖고, 2001년 MRA를 체결하였다.⁴⁾ 한국의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품목별 합의 내용

첫째, 통신단말기 분야는 모든 통신단말장치 및 무선장비에 대한 적합성판정 절차를 포괄하고 있다. 양측은 MRA를 통해 통신단말기 수입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판정결과를 수락하고, 적합성평가절차는 EU의 이사회의 ‘통신단말기와 무선장비 및 적합성 상호인정에 관한 지침(1999)’과 일본의 ‘통신사업법(1984)’ 및 ‘무선장비 적합성 인증 기술규정(1981)’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진행된다.

둘째, 전기기기분야이다. 전기기기 분야는 ‘Low Voltage Directives(저전압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국내의 지정된 적합성판정 기관이 발급하는 안전증명서를 획득하면 추가 인증없이 전기기기를 수출할 수 있다. 즉, 양측은 전기기기, 기계, 통신장비 등의 품목에서 적합성 판정을 수용하고 있다.

셋째, 공업용 화학품 우수실험제도(GLP)에 관한 MRA는 OECD 원칙에 따라 지정된 검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상호간 인정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81년 ‘Mutual Acceptance of Data(상호자료수용)’과 1989년 ‘GLP Compliance Monitoring(GLP 이행감독)’에 관한 결의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협정은 화학품, 살충제, 의료용 화학품, 식품첨가제 등 화학상품에 대한

4) 『Agreement on MRA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Japan』, Official Journal L 284, 2001.10.29, pp.3-8.

모든 비임상적 화학연구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넷째, 의약품 생산공정 품질관리이다. 양국은 GMP 표준에 의해 상호간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양국간 추가적인 검사나 인증절차 없이 상호간 수출이 가능하다. 의약품에는 수의면역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이 대상이다. 의약품의 제조과정, 생산, 포장, 상표부착, 검사 및 도매 등 GMP가 적용되는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표 3〉 일-EU간 MRA 체결 항목

분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의료기기	○	○	○	○	○	○
의약품 GMP*	○	○	○	○	○	○
통신기기	○	○	○	○	○	○
EMC**	○	○	○	○	○	○
LVD***	○	○	○	○	○	○
오락용 소형선박		○	○			○
저압용기	○			○	○	○
기계	○			○	○	○
자동차				○		○
신체보호구	○					○
화학품 GLP****	○					○
잔디깎는 기계						○
측정기기						○
완구						○
위험화학물질						○
건설자재						○
가스기기						○
트랙터						○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생산공정 품질관리),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기적 적합성평가절차), *** Low Voltage Directives (저전압에 관한 지침), ****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제도)

자료 :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절차에서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1998, p.9.

2) 일-EU FTA의 MRA 협정 내용

일본과 EU는 상호간 관세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세인하보다는 관심 사항이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EU의 경우 일본 수출품의 70%가 무관세이기 때문에 비관세장벽 철

폐와 정부조달 분야에 관심이 높으며, 일본은 자동차, 전기기기, 화학제품 등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은(약 65%) 품목의 관세 인하와 철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 주요 품목별 합의 내용

완성차에 대해 EU는 10년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일본은 5년 유예기간을 제시하였는데, 최종 7년으로 합의되었으며, 자동차 부품은 91.5% 이상 품목에 대해 현재 3~4%인 관세가 협정 즉시 철폐되도록 합의하였다. TV 제품의 경우 5년 후 관세 철폐를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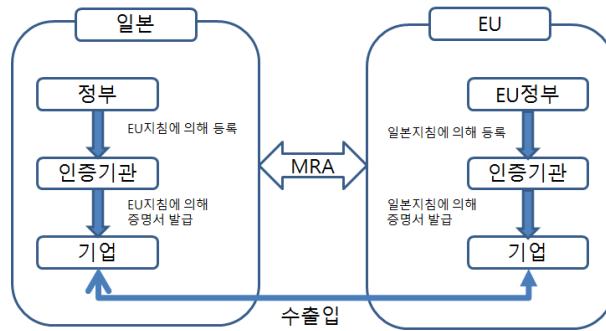
농산물의 경우 EU의 치즈, 돼지고기 등에 대해 TPP 수준까지 인하를 요구하였다. 일본은 소프트치즈에 대해 수입쿼터(약 2~3만톤)를 제시하고,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돼지고기는 TPP 수준으로 인하하여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EU산 와인, 일본산 녹차 및 전통주 등도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합의하여,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 졌다. 특히 EU 국적의 선박은 현재 일본 국토교통성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발효와 함께 1회 허가와 함께 일본 연안에서 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운송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은 운행상 안전과 관련된 조달분야에 대한 국제입찰 금지조항(안전주석)을 철폐하고 EU는 철도관련 품목을 개방하였다. 분쟁과 관련해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EU는 상성중재기관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제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나. MRA에 의한 수출입절차

FTA에 상호승인협정이 포함되면 수출과정이 대폭 간소화된다. 일본은 자국내 제3자 인증기관이 유럽의 규범에 따라 성능평가 인증서를 일본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심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양자간 2중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일본과 EU는 안전심사의 상호인정에 따라 기준 및 규격도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공업규격(JIS)와 EU의 공업규격인 CE마크가 통합되는 경우 일본은 자유롭게 EU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MRA에 의한 수출입절차

IV. 일-EU MRA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1. 교역현황

먼저 일본의 對EU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양자는 경제 분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U는 일본의 4번째 무역상대국이며, 최대 투자유입국이다. 일본은 EU의 6번째 무역상대국이다. 양자는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경제현안과 글로벌 이슈, 지역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EU는 2013년 이후 일본의 수출입 총액에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금액으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교역액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이후 일본의 대EU 수출이 감소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2017년 5월까지의 전체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일본의 대EU 적자폭이 점차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4> 대EU 교역액

(단위: 억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954	817	722	721	660	734	310
수입	803	835	790	777	713	749	307
수지	151	-18	-68	-57	-53	-16	3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검색일: 2017. 7. 26), <http://www.jetro.go.jp/world/japan/stats/trade/>

* 2017년은 1월~5월 자료임.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일본의 대EU 수출은 일반기계(26.3%), 수송용기기(20.2%), 전기기기(20.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은 화학제품(28.9%), 수송용기기(15.3%), 과학광학기기·의류·가방류 등 기타(14.3%)로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재무성, 2017)⁵⁾. 한국은 승용차(11.7%), 선박(10.0), 자동차부품(7.8%) 등 수송기기와 전기기기(2.3%)가 주로 수출되고 있다.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비중이 44.1%로 나타났다(국제무역연구원, 2017:4). 일본과 한국의 對EU 교역품목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 일본의 최대투자국은 EU이다. 1990년대 이후 2011년까지 EU의 대일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1년 이후 EU의 재정적자로 인해 2013년 신규진출감소와 퇴출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의 대일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재무성, 2017)

한국과 EU의 일본 교역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은 대일본 수출은 2016년 244억 달러로 총 수출의 4.9% 수준이다. EU의 경우는 1.2%로 나타나 한국이 EU보다 일본시장에 더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석유와 역청유(9.2%), 전자직접회로(4.0%), 은(3.2%), 자동차부품(3.2%) 순으로 상위 10개 품목이 30.6%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경우 주로 승용차(12.8%), 의약품(11.6%), 치료용 혈청(2.5%), 자동차 부품(2.4%)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EU 모두 일본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는 상호간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응방안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EU FTA가 타결됨에 따라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對EU 수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한국과 일본의 관세율 차이가 큰 수송기기, 화학제품, 전기기기, 기계 산업의 대EU 수출은 부정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송기기 중 자동차 부품은 한-EU FTA로 관세가 철폐되었음에도 EU 시장에서 일본차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일EU FTA 발효 7년 후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는 시점에 한국의 대EU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은 농수산물, 섬유 등의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쟁점이던 치즈가 포함됨에 따라 유제품의 對일본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의 MFN관세율은 유제품이 24.6%이다. 특히 섬유와 의류의 경우 일본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의류 등의 對일본 진출에 어려움이 나타

5) 財務省 貿易統計, <http://www.customs.go.jp/toukei/suii/html/time.htm>(검색일: 2017. 7. 26).

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다.

일본과 EU는 이미 2001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여기에 2017년 EPA가 타결됨에 따라 한국 입장에서는 거대한 EU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EU 상호인정협정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U의 적합성평가절차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EU의 규격인 EN(European Nom)은 IEC에서 발행한 국제기술기준을 EU에 적용한 것이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플러그, 콘센트 등의 모양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만 다를 뿐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한국은 선진국 보다 늦게 공업화가 진행되었기에, 국제화 또는 국제표준화에 늦게 합류하였다. 80년대 이후 국제화를 통해 한국의 기술기준이 세계적 기술수준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인 K규격은 IEC 규격을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EU의 기술기준의 차이는 상당히 적다. 단지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 기술 기준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EU FTA의 상호인정협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둘째,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U의 적합성판정 절차의 특징은 ‘제조업자에 대한 상호인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별 인증기관이나 제3자 시험이나 인증기관을 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합함을 선언하여 CE marking이 부착된 상품을 EU와 일본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문적인 인증기관일 것이다. 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등은 대표적인 인증기관이다. 이 두 기관은 제3자 시험/인증기관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시험기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각국의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이해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출 증대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EU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도 EU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EU의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전략은 의료기기, 의약품, 통신기기, 전기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EU시장에서 선박,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섬유,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양국이 정치적 합의를 했지만 유제품 및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 과제로 남아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관세인하,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보다 한-EU FTA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상호인정협정(MRA)은 정부간 체결된다. 그러나, 상호인정협정의 적용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협상 참여와 노력만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완성할 수는 없다. 상호인정협정을 기업들의 국제적 역량강화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외적 협상 노력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자유무역을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은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왔으나, 새로운 형태인 기술장벽이 높아지게 되었다. WTO에서는 이러한 기술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해 TBT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완전히 기술장벽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TBT 협정에서는 회원국간 상호인정협정(MRA)을 권고하고 있다.

상호인정협정(MRA)은 EU 시장을 형성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호인정은 각국의 규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목적이 동일하다면 차이를 인정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는 개념이다. 일-EU간 상호인정협정은 2002년 발효되고, 2016년 4월 의약품에 대한 GMP에 관한 부문 별 부속서가 개정되었다. 이후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MRA에 대한 협상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EU FTA 체결이후 한국은 EU에 2016년 기준 466억 달러를 수출하여 총 수출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총 수출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대EU 수출상품이 승용차, 선박, 자동차부품 등 수송기기, 전자제품 등으로 HS4단위에서 44.1%가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EU FTA 타결은 한국의 주요 상품의 對EU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EU가 2017년 7월 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익을 우선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일본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 한국 수출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수송기기, 화학제품, 전기기기, 기계 산업의 대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시장에서는 한국의 농수산물, 섬유, 의류산업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

분은 상호인정협정 부분이다. 상호인증협정은 자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입할 때 상이하게 적요되는 기술기준이 다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기준의 상이함을 인정하면서 서로 불편하거나 불공정한 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상호인정협정의 수요자는 수출입 기업들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적합성평가관들의 동향등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교역 당사국의 인증 및 규제 정보에 대한 정보 입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일본과 EU의 FTA 협상과 상호인정협정(MRA)에 대해 소개하였다. 상호인정협정(MRA)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EU의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일-EU FTA 협정상 상호인정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국제적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출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한-EU FTA 등 기존의 한국이 체결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MRA 체결은 정부간 발생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도 MRA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상호인정협정은 기업과 정부에게 다양한 실익을 제공한다. 상호인정협정으로 기업에게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효과적이다.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국가간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외주기업의 참여가 촉진되며 고용증대 효과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상호인정협정은 국익을 극대화하고 기업과 정부 등에게 효율적인 수단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은영·이준원·민경실, “日-EU EPA 타결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제21권, 2017, p.6
-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절차에서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한국기술표준원, 1998, p.9.
- 노재확·이학로·최혁준. “일본과 EU의 경제동반자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상정보연구」제17권 제4호, 2015, pp.279-295.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해외주요국의 인정기관 현황”, 「IFRE」 2011, pp.6-8.
- 손원근, “WTO 체제 하에서 상호인정협정(MRA)를 통한 기술무역장벽(TBT)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송백훈, “일본-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무역학회지」, 제40권 제3호, 2015, pp.73-89.
- 신경주, “상호인정협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3.
- 이종원, “일본의 대EU EPA추진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4호, 2009, pp.373-394.
- 정훈,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7-10, 2007, pp.93-95.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새롭게 바뀌는 일본의 수입인증제도”, 「Global Business Report」, 09-004, 2009, pp.1-6.
- IEC, “Safety of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the safety of high-frequency surgical equipment”, IEC 601-2-3. 1991.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greement on MRA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Japan”, 「Official Journal L 284」, 2001, pp.3-8.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Resolution of 21 December 1989 on Global Approach of Conformity Assessment”, 「Official Journal C 010」, 1990, pp.1-2.
-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994. pp.1-25.
- <http://certinfo.or.kr/findCertOfNation.do> (해외인증정보시스템, 2017년 7월 검색)
- <http://www.aeo.or.kr/intcrn/aeoNationMraView.do> (한국AEO진흥협회, 2017. 7월 검색)
- http://www.movonlab.co.kr/sub/sub05_01.php.
- <http://www.mofa.go.jp/region/europe/eu/agreement.html> (일본외무성, 2017.7.26.일 검색)
- 財務省 貿易統計, <http://www.customs.go.jp/toukei/suii/html/time.htm> (검색일: 2017. 7. 26).

ABSTRACT

A Study on the Response of Export Companies to Japan-EU EP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Young-Ho Kim**

In 2017, the EU-Japan FTA talks were resumed ahead of the G20 summit in Brussels, Belgium, and agreed to abolish tariffs on 95% of all trade items. These figures are highly liberalized agreements that are equivalent to the Pacific Ri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P). Particularly, Japanese automobiles were aggressively negotiating the abolition of tariffs with 7-year grace period and the gradual elimination of European cheese in 15 years. If the agreement is concluded, the tariffs of 1 billion euros (about 1.3 trillion won) will disappear, and Korea, which has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with Japan, will be hit by the processed food, chemical products, medical equipment, dairy products and automobile industries. 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that can directly affect the Korean companies in the content of the Japan-EU FTA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xport companies.

Key Words : Japan-EU FTA, MR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B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eokyeong University in 2017.

** Professor, International of Trade, Division Business Administration, Seokyeong University.